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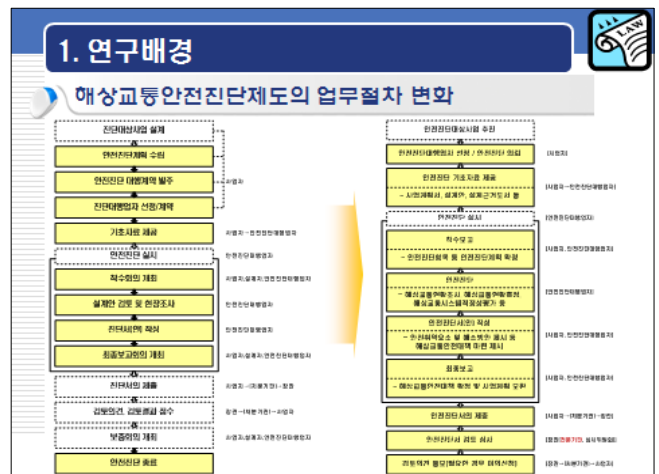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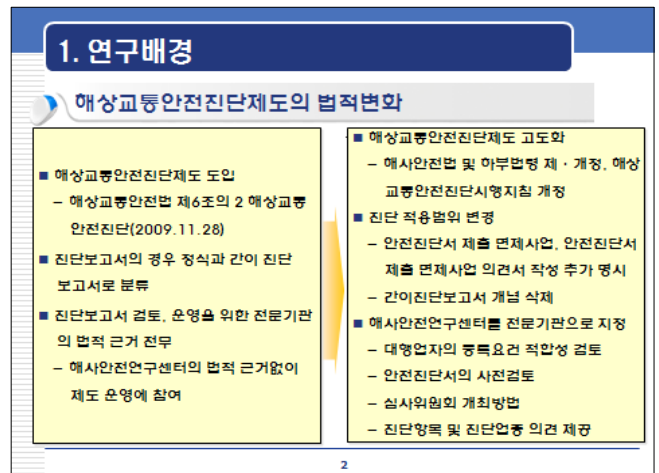
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서의 업무관리 프로세스 제안

*김 부영 · **최 윤규 · **김 영두 · † 조 익순

*, **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연구원, †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교수

요 약 :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(이하 제도)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. 하지만,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.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「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」, 「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」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,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,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.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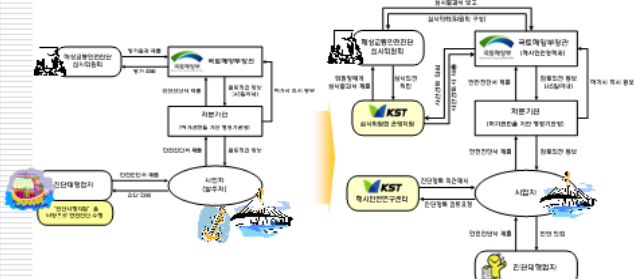
핵심용어 :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, 프로세스, 안전진단항목, 안전진단서의 제출, 안전진단서 사전검토, 안전진단서의 보완안전진단서의 평가, 심사위원회, 의견서 검토절차, 의견서 제출, 해상교통환경



* 주 저 자 : 김부영(정회원), kby3809@kst.or.kr
 † 교신저자 : 조익순(중신회원), ischo@hhu.ac.kr

1. 연구배경

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체계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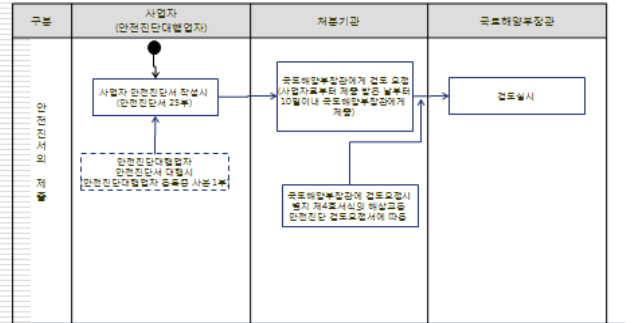


시사점

- 전문기관(해사안전연구센터) 법적 지위에 따른 역할 확대로 운영적 측면의 향상 기대
- 그러나, 진단체계 변화에 따른 **사업자 및 저분기관의 인식 저하 발생**

2.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프로세스

제2장 1절 안전진단의 실시 및 안전진단서 작성



2.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프로세스

제2장 1절 안전진단의 실시 및 안전진단서 작성

시행지침 제12조 (안전진단대상)	<p>제12조(안전진단대상) ① 안전진단대상사업자는 물류 2의 "안전진단대상사업체 안전진단 항목"에 따라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안전진단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안전진단대상사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 또는 해상 수역의 특한 조건 등으로 인하여 안전진단항목의 일부를 적용할 필요가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안전진단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안전진단항목을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</p>
시행지침 제18조 (안전진단서의 제출)	<p>제18조(안전진단서의 제출) ① 사업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부터 안전진단서를 받은 날 법 제15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저분기관에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규칙 제4호제1항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요청서와 안전진단서 중 일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저분기관이 국토해양부(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) 제2조에 따른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을 제외한다)인 경우 2.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인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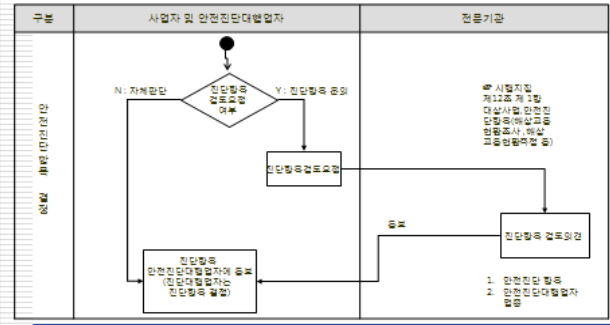
3. 안전진단서 평가 프로세스

제2장 2절 안전진단서의 평가

시행지침 제19조 (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)	<p>제19조(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서가 제출되면 전문기관에게 해당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및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작성의 적합성(안전진단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),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적정성 및 심사위원의 개최 일정 중 해당 사전검토서 작성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안전진단서의 보완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저분기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청 등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
시행지침 제20조 (안전진단서의 보완)	<p>제20조(안전진단서의 보완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 중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경우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안전진단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안전진단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와 협의하여 보완한 안전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제18조를 준용한다.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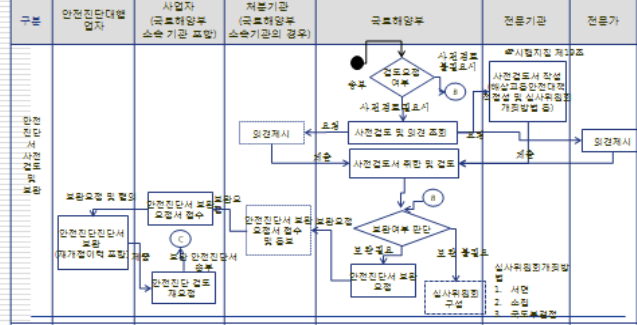
2.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프로세스

제2장 1절 안전진단의 실시 및 안전진단서 작성



3. 안전진단서 평가 프로세스

제2장 2절 안전진단서의 평가



3. 안전진단서 평가 프로세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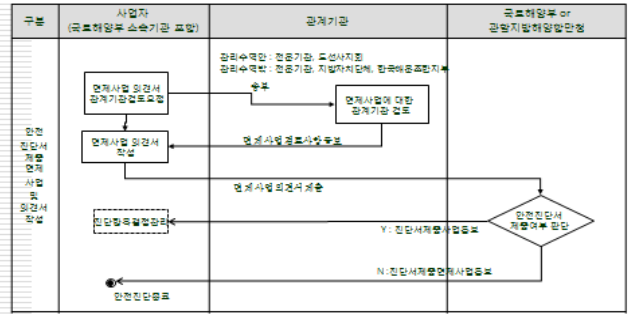
제2장 2절 안전진단서의 평가

시행지침 제21조 (심사위원회의 개최)	제21조(심사위원회의 개최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 검토 및 안전진단서의 보완이 불이행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안전진단서를 심의하여야 한다.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서(제20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후 제출된 안전진단서를 말한다)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사대상인 안전진단서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심사위원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외비로 진행하여야 하는 심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개최 당일에 제공할 수 있다.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들이 불참하지 아니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.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형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시험제안전진단담당자를 포함한다의 출정을 물을 수 있다.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4명의 1 이상의 불참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
시행지침 제25조 (부보)	제25조(부보) ①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심사자가 참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위원장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에 근거하여 제24조에 따른 안전진단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조연부 등의 또는 '부보'의 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명의를 필요한 조건 또는 세운 안전진단서 실시하도록 허가나 안전대착을 수명하여야 할 사항 등 명목 내용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확인을 거칠 수 있다.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명목이라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전체 위원들의 과반수의 불참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10

4.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관련 프로세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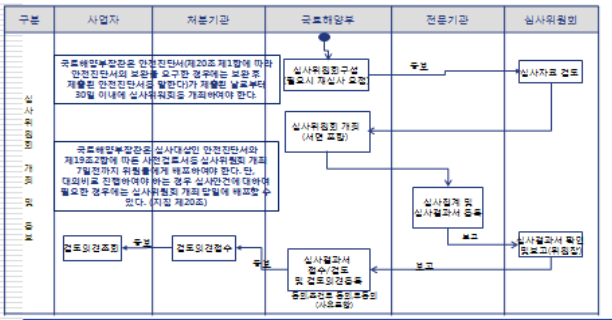
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



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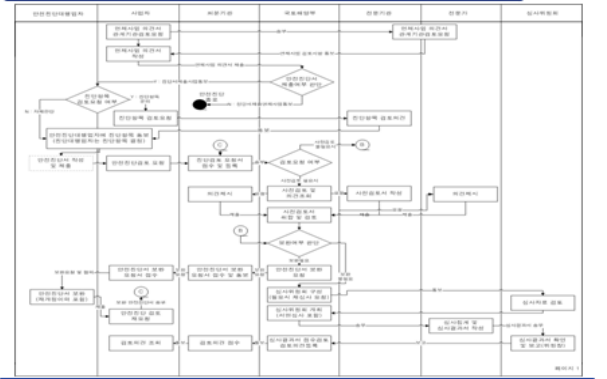
3. 안전진단서 평가 프로세스

제2장 2절 안전진단서의 평가



11

5. 종합



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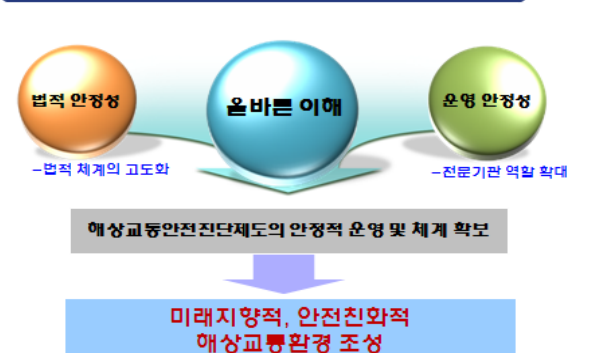
4.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관련 프로세스

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

시행지침 제35조 (의견서의 검토 절차)	제35조(의견서의 검토 절차) ① 지방해양안전청장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하려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불이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 ② 지방해양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,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불이행이라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 ③ 지방해양안전청장은 해당 사업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도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,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.
시행지침 제36조 (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)	제36조(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)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안전청장이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(해상교통안전국)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의 검토, 통보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 제16조, 규칙 제13조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른다.

12

5. 종합



15